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 포함 및 관련
정기교육 실시근거 마련〉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43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02. 26.

다. 회 부 일 : 2025. 0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원으로써 우리 사회질서의 근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 계엄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승진 시 관련 과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관련 각종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매년 경찰공무원이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20조제2항 신설),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u>시험방법</u> ,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에는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③ ----- ----- <u>시험과목, 시험방법</u> ----- ----- -----.
제22조(교육훈련)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2조(교육훈련)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 및 「계엄법」과 관련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u>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이 경우 제3조에 따른 경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⑤ ----- ----- ----- ----- -----<u>사항</u> 및 제4항에 따른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한 <u>사항</u>은-----.
---	--

가. 현행 법령상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및 교육훈련 현황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제20조에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 시험의 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에는 이미 ‘헌법’이 포함되어 있으나, 「계엄법」은 별도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¹⁾ 특히, 2022년부터 순경·경위 공채 시험에서 헌법을 필수과목

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으로 지정·운용하고 있으며, 경쟁 승진시험에서는 2006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운용 중임.

<주요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근거 규정 및 필기시험 과목>

종 류	근거 규정	필기시험 과목
경찰공무원(순경)	경찰공무원 임용령	■ 헌법 형사법 경찰학 / 영어 한국사
경찰공무원(경위)		■ 헌법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행정법/행정학(민법택) / 영어 한국사
해양경찰공무원(순경)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해양경찰학 형사법 해사법(헌법택), 영어 한국사
민간부사관(육군)	육군본부 훈령	■ 필기시험 없음 서류전형으로 대체
간부·학사사관(육군)	육군본부 훈령	■ 지적능력평가 상황판단 직무성격검사
군무원(행정)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행정법 행정학 국어 영어 한국사
국가공무원(9급행정)	공무원임용시험령	■ 행정법 행정학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공무원(9급행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 행정법 행정학 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공무원(소방사)	소방공무원 임용령	■ 소방학 소방법 행정법 영어 한국사
국가정보원(7급)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 국가정보적격성검사 논술
경호공무원(7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직적격성평가(PSAT)
국회공무원(8급)	국회인사규칙	■ 공직적격성평가(PSAT), 영어 한국사
법원공무원(9급)	법원공무원규칙	■ 헌법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국어 한국사 영어

①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삭제

또한,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22조는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경찰청은 신임 경찰관 교육과정과 경감 이상 승진자 교육과정에서 헌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총경 및 경무관 전원이 이수해야 하는 '역량강화 과정'에도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²⁾ 경찰 사이버교육포털에서도 경찰관들이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헌법교육을 개설하고 있음.

나. 검토사항

개정안은 최근의 불법 계엄사태를 배경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이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유사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음.

경찰공무원은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질서 유지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헌법적 가치와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특히 계엄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2)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총경 및 경무관 지휘역량강화과정에서는 총경의 경우 2주 교육 중 4시간(총경 기본교육 후 3년마다 이수, 수료자만 경찰서장 보임), 경무관의 경우 2주 교육 중 2시간(전 경무관 대상 현급 1회 교육)의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경찰공무원의 역할과 임무,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수적임.

최근 발생한 불법 계엄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해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과 법체계상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 포함 의무화 관련하여,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헌법'이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중 헌법 관련 부분은 현행제도에 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특히 「계엄법」은 특수한 비상상황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일상적인 치안 활동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법적 지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직급과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양한 데, 모든 시험에 「계엄법」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는 것은 시험과목 구성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³⁾

시험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적 상황과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특정 과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음.

또한, 공무원 채용·승진시험의 과목은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군 공무원 시험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필요함.

다음으로, 헌법 및 계엄법 정기교육 의무화 관련하여,

개정안은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경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교육 강화는 경찰공무원의 법적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모든 직급의 경찰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경찰공

-
- 3) 계엄법」은 군사적 임무를 규정한 절차법으로, 계엄법 규정 내 경찰기관이 직접 계엄 행위에 관여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사항은 없음. 또한, 계엄법에 관한 학술도서도 부재하고, 계엄법 교육과 가장 밀접한 사관학교 등 군사기관 내에서도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군 채용시험의 과목으로도 채택되어 있지 않음.

무원 교육훈련규정」이나 「경찰청 인재개발 기본계획」 등 기존 체계를 활용⁴⁾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계엄법」은 헌법 부속 법률로써 헌법 시험과목에 포함시켜 관련 중요사항을 숙지토록 하는 방안이나, 계엄 상황 발생 시 경찰의 역할과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기존 직무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

경찰청은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이미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이 의도하는 목적의 상당 부분이 충족되고 있으며, 「계엄법」을 모든 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험

4) 「경찰공무원법」은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 경찰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경찰청 인재개발 기본계획」, 「경찰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계획」 등 하위 규정에 따라 층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은 교육훈련기관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 등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청 인재개발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매년 수립하여 경찰위원회에 보고 및 인사혁신처에 통보함. 각 교육훈련기관은 매년 과정별 목표, 과목, 기간, 대상 등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함.

5) '19년 경찰공무원(경정이하) 정기 승진시험 헌법 시험문제

28.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이 긴급명령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동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그 명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 ③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이미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법률의 교육 내용이나 시간을 법률에 규정하기보다 행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자료>

<신임·승진경찰 헌법교육 현황>

교육대상 및 과정명		헌법교육 시간
경찰대학생		8학기 중 90시간(편입생은 4학기 중 45시간)
신임경찰관교육	경위 공채	52주 교육 중 6시간
	순경 공채	38주 교육(현장실습 포함) 중 6시간
승진경찰관교육	경감 기본교육	2주 교육 중 5시간 ※ 미수료시 다음계급 승진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경정 기본교육	4주 교육 중 4시간 50분 ※ 미수료시 다음계급 승진심사대상자에서 제외
	총경 기본교육	20주 교육 중 6시간 ※ 미수료시 다음계급 승진심사대상자에서 제외

<총경·경무관 지휘역량강화과정 헌법교육 현황>

교육대상 및 과정명	헌법교육 시간
총경 지휘역량강화 과정	2주 교육 중 4시간 ※ 총경 기본교육 후 3년마다 이수, 수료자만 경찰서장 보임
경무관 지휘역량강화 과정	2주 교육 중 2시간 ※ 全 경무관 대상 현급 1회 교육>>

<경찰 사이버교육포털 내 사이버 헌법교육(경찰관은 자유롭게 학습 가능)>

- 헌법을 통한 국가기관의 이해(1시간 50분), 헌법정신(인권)과 보안경찰(3시간 20분), 헌법의 이해(20분) 등 사이버 강의 운영 중